

제 14 장 경쟁

제1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칠레에 대해, 1973년의 대통령령 제211호 그리고 1999년의 법 제 19610호,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
- 나. 한국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3320호, 1980년), 그 시행규칙 및 개정사항,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항 및 나항의 법규에 대한 변경사항,

경쟁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칠레에 대해, 국가경제원, 그리고
- 나. 한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집행활동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나 절차를 통한 경쟁법의 적용을 말하며, 그 결과 벌칙이나 구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2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상쇄되지 않도록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하고 조정할 것에 합의한다.

2.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왜곡이나 제한을 금지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관행 및 남용 행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양 당사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공조한다. 이러한 협력은 통보, 협의,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수용되는 경쟁원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제14.3조 통보

1. 각 경쟁당국은 자국의 집행활동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가.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제한조치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다. 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2. 통보가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수행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보는 당해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타방 경쟁당국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통보는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상기의 상황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14.4조 집행활동의 조정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활동에 관하여 공조할 의사를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조는 당해 당사국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일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저해되는 경우의 협의

1. 각 당사국은 집행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을 자국법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에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전달받은 당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른 활동의 계속 및 자국의 최종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받음이 없이 동 견해에 대해 완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국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행하고 있거나 행해 왔던 반경쟁관행이 그 기원에 관계없이 자국의 이익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당해 경쟁당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협의를 받은 경쟁당국은 자신의 완전한 집행재량을 저해받음이 없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국법에 부합하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관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제14.6조 정보의 교환 및 비밀유지

1. 양 경쟁당국은 각 당사국 경쟁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2. 투명성 제고의 목적상, 그리고 각 당사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비밀유지에 관한 규칙 및 표준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시,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당해 경쟁당국이 판단하는 사안에 적용된 제재와 구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근거를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3. 모든 정보의 교환은 각 당사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비밀유지 기준에 따른다. 유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비밀정보나, 유포시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4. 각 경쟁당국은 타방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며, 정보제공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주체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비밀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비밀정보는 당사국의 법원에 제공될 수 있다.

제14.7조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상호 경험을 활용하고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집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8조 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공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 자유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경쟁규칙의 적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그 기업의 특정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이 경쟁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제14.9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19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